

중요한 안내 말씀

식물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

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



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*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 (Phytosanitary certificate)를 첨부하여 수입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

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. (뒷면 참조)

* 과실, 야채, 곡물 등 이외에 절화(꽃가지), 종자, 묘목이나 식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의 일부(드라이 플라워 등)도 포함됩니다.
또한 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(수입 검사의 수검은 필요) 및 검사증명서와 수입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도 있습니다.(뒷면 참조)



식물방역법에 따라,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식물은 폐기 처분대상입니다.

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및 수입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식물의 병해충 침입 경계실시중

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

⚠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주요 식물

- 지중해 과실파리와 굴과실파리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들여오는 대부분의 과실·과채류 (감귤류, 망고 등)
- 코드린나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들여오는 사과와 체리 과실 등

* 그외 일본 미발생으로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는 많은 식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.



지중해 과실파리



굴과실파리



코드린나방

◆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 (⚠수입검사의 수검은 필요)

- 울금 및 두충의 건조된 식물
- 아몬드, 캐슈넛, 코코넛, 후추, 피스타치오, 호두 및 마카다미아의 건조된 종자 (재배용은 제외)

◆ 검사증명서의 첨부 및 수입검사의 수검이 불필요한 것

- 제재
- 제다
- 알코올, 초산, 설탕에 절인 된 식물 등

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주요 연락처

- **요코하마 식물방역소** +81-45-211-7153
- **나고야 식물방역소** +81-52-651-0112
- **고베 식물방역소** +81-78-331-2386
- **모지 식물방역소** +81-93-321-2601
- **나하 식물방역사무소** +81-98-868-2850